

정권교체 기반다지기에 짓눌린 인권

김수경
인권하루소식 편집인

1. 글을 시작하며

작년 하반기는 노동법과 안기부법의 날치기 통과를 겨냥한 터뒀이 과정이었다. 8월 한총련 연세대 사태는 6천여 명에 가까운 학생과 시민들이 연행되고, 462명이 구속되는 김영삼정권 들어 최대의 사건이었다. 정부와 언론은 한총련을 '친북적 단체'로 몰아붙인 채 벼랑 끝으로 밀어붙였다. 사태가 끝난 뒤에 정부는 한총련 컴퓨터 통신망 폐쇄를 비롯해 시위주동자 검거를 이유로 수색영장 없이 전국 대학을 들이닥쳤고, 무작위적으로 학생들을 연행해 갔다. 또한 이러한 탄압은 비단 학생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등의 침해가 사회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9월 강릉 북한 잠수정 침투사건 이후 더욱 경색되었다.

그리고 갑작스레 안기부법 개정논의가 제기되었다. 총체적 경제위기의 해결은 뒷전으로 미룬 채 고통분담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세계화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노동법 개악과 재집권 전략에 따른 공안정국 조성을 기도한 안기부법 7조(찬양·고무등)와 10조(불고지) 개악은 대선정국의 폭풍으로 다가올 것이 불보듯 뻔하다. 이는 표면상으로는 '국가안보'를 내걸고 있지만 실상은 '정권안보' 때문임을 누구나 알고 있다.

96년 하반기 안기부법과 함께 양대산맥을 이루는 사회적 사건은 노동법 개정이다. 당초 정부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국제적 기준에 따른' 노동법 개정을 한다는 명분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8개월 여에 걸친 길고도 지루한 공방전을 벌인 끝에 내놓은 정부의 노동법안은 자본가들에게는 환호를 받은 반면 노동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가을 정기국회에서 개정 노동법안에 대한 밀고당기는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지만 결국 결론을 보지 못한 채 임시국회로 이어졌다. 그리고 1996년 12월 26일 새벽 6시 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154명은 안기부법과 노동법을 포함한 11개 법안을 순식간에 날치기 통과시켜 버렸다. 12월 26일 오후부터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시작되었다.

'노동3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노동악법'·'안기부법'의 날치기통과는 '위로부터의 문민개혁'의 종결을 사실상 선언한 것이다. 날치기가 있었던 그날부터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을 중심으로한 '총파업투쟁'은 전국민적 연대투쟁으로 발전하였으며, 이 사회의 노동자계급이 가장

중심적인 계급이자 정치세력임을 보여주었다.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의 돌풍 속에 여타의 사회적 문제들은 외면당했다.

작년 한해 여성부문의 주요한 움직임으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외에도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작업을 꼽을 수 있다. 딸의 동거남이 딸과 자신을 폭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 끝내 동거남을 살해하고만 이상희 할머니 사건이 촉발제가 된 가정폭력방지법은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정으로 이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결국 노동법·안기부법에 떠밀려 법제정이 연기되었는데 이렇듯 민생문제는 여전히 '세계 최후의 분단국가로서 국가안보 우선' 논리 속에 무시·간과되는 것이 아닌가는 우려를 단적으로 드러내었다.

인권상황이 전반적으로 악화되었지만 한편에서는 대법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인신구속제도의 변화로 영장실질심사제 도입이 있었다. 영장실질심사제의 도입은 인신구속제도의 개선에 있어 사법사상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받고 있다. 인신구속의 신중을 피하기 위해 구속수사의 관행이 무너지고 있으며, 영장청구건수의 감소와 더불어 영장기각률이 현격하게 낮아졌다. 물론 긴급체포의 남용, 수사기관의 업무량 증가, 수사인원의 부족등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인권신장이라는 측면에서 그 긍정성은 높이 평가받고 있다.

또한 긍정적 사건으로 소위 김동식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상 불고지혐의로 구속된 박충렬·허인회 씨의 무죄판결, 치과의사 모녀 살해사건 무죄판결, 영화법의 사전심의폐지 등은 재판부의 제자리 찾기 모습이 눈에 띄는 사건이었다.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황인행)가 12월 18일 과천시 뇌물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23시간이상 잠을 채우지 않은 채 무리하게 조사하는 등 가혹행위가 인정된다며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받은 이성환시장 (58)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 판결은 우리사회에 만연된 공권력의 횡포와 일상화된 불법수사 관행에 일침을 가하는 사건이었다.

이밖에도 95년 2월 발효된 고문방지조약에 따라 정부는 첫 보고서를 제출했고, 97년 11월 13일 제네바에서 보고서 심의가 있었다. 한국인권단체협의회에서는 이 자리에 반박보고서를 준비해 옵서버로 참석했는데, 민간단체보고서에 따르면 문민정부 들어선 이후에도 고문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악법이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고문범죄자 처벌이 안되었다는 지적이다. 또 과거군사정권에 의한 고문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와 보상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정부보고서 심의결과, 한국정부에 △ 고문방지조약 21조(국가간 문제제기권) 22조(개인제소권) 철회 △ 수사기관 종사자 및 의료인에 대한 고문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 △ 피의자 심문시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 △ 구금기간 축소 △ 구금시설의 감시에 대한 독립기구 설치 △ 고문피해사례를 조사·수사해 서면보고할 것 등을 권고했다. 수사의 신속성을 위해서 밥샘조사는 불법수사가 아니라는 논리가 버젓이 고개를 드는 인권의식 속에서 한국정부에게 이 권고안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 의문이다.

2. 96년 하반기 인권상황

1) 안기부법 개악 및 김형찬씨 분신기도 사건

김영삼정권은 출범 초기인 93년 여야합의로 불법수사에 의한 인권유린과 정보정치의 폐단을 막기 위해 개혁작업을 단행한다며 안기부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집권말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안기부법을 되돌리는 작업을 불법적으로 강행했다.

개악 밑그림은 때로 의도적으로 때로는 계기를 통해 수순을 밟아간다. 한총련 연세대 사태, 간수교수 사건, 북한 잠수정 침투사건이 터져나오고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국보법 7조(찬양·고무등)와 10조(불고지)에 대한 안기부의 수사권에 대한 부활을 내용으로 하는 안기부법

국보법상 찬양·고무 및 불고지죄 위반사범 구속자 현황 (92.1.1-96.8.31)

연도	92	93	94	95	96.8	계
국보구속자	514	337	714	414	382	2,361
찬양·고무, 불고지죄	251	99	334	240	202	1,122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정부여당과 안기부의 주장대로 수사권한 강화의 필요성은 국가안보가 아닌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치인사 및 진보세력에 대한 족쇄역할을 할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에 사회 각계·각층 사람들은 국가보안법 7조와 10조 수사권을 안기부에게 되돌려주는 안기부법 개정은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양심의 자유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비단 안기부법 개악은 진보세력이나 운동권에 대한 제약으로 작용하는 것만이 아닌 일반대중에게도 공포분위기 조성등 억압장치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우려된다.

위의 표는 국보법 위반 혐의자중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 위반혐의로 구속된 사례가 얼마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가를 보여준다. 국가보안법 중에서도 이 조항에 대한 범조계의 위헌성 논쟁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우려를 증명하듯이 12월 5일 김형찬 씨(26·수원 경희대 유전공학과 90학번)가 안기부의 불법수사에 항의해 분신을 기도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김 씨는 수배자(수배자는 집시법 위반혐의자로 안기부의 수사대상이 아니었다)로 오인돼 안기부 수사관에 의해 강제연행되었다. 그뒤 경찰서와 경기도 대공본실에서 안기부의 폭력·강압 수사에 두려움을 느끼고 이를 외부에 알리고자 분신을 기도해 하체에 3도 화상을 입고 입원치료중이다. 이밖에도 소위 간첩 김동식 사건에 연루되어 불고지혐의로 구속된 바 있는 박충렬·허인회 씨의 무죄판결은 안기부에 의한 인권침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3월18일로 끝난 임시국회에서 결국 안기부법 문제는 다음으로 넘겨졌다).

2) 노동법 개악- 날치기 당한 노동자의 권리

92년 김영삼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노동법 개정을 들고 나왔다. 출범 이후 이인제·남재희 노동부장관에 의해 주요 현안으로 추진되다가, 95년초 이형구 노동부 장관때 무기한 연기되더니 96년 들어 김영삼 대통령이 개정 의사를 나타냄으로써 추진되기 시작했다. 처음에 노동계는 신노사관계 구상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노동자의 권익이 상당 부분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마저 낳았다.

그러나 5월9일 출범한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8개월간의 노동법 개정 논의는 무산되고,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에 대해 민주노총을 중심으로한 노동계는 총파업으로 맞섰으며, 이에 민주진영 역시 개정안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이 지적하는 개악 노동법의 문제점은 이렇다.

우선 헌법과 ILO조약 제87호가 보장하고 있는 자주적 단결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이 봉쇄되었고, 상급단체 복수노조가 3년간 금지되는 것을 비롯해 단위노조 복수노조 설립이 5년간 금지된다. 또한 노조활동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이 대폭 추가되었다. 개악 노동법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부당노동행위 및 금지조항이 신설되고, 노조대표자에게 체결권 일임하는 강제조항이 신설되었다. 또 쟁의기간중 대체근로가 허용되며, 쟁의행위기간중 임금지급 금지조항 신설등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밖에도 벌칙이 대폭 강화되었고,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퇴직금 중간청산등이 합법화되는 등 친자본가적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97년 12월 26일 부터 시작된 노동법 개악반대 투쟁은 결국 노동법 재개정이라는 결과물을 가져왔다. 하지만 임시국회를 통해 97년 3월 10일 여야합의로 통과되는데 노동법 개정안은 단결권, 파업권 등 노동기본권을 대폭 후퇴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새 노동법에 따르면, 무노동무임금을 조문화하였으며, 대체근로를 금지했던 구법을 바꿈으로써 파업의 실질적 무력화를 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5년 뒤부터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금지를 명문화해 노조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노동법 개정의 최대 쟁점사항이면서 국제적 관심사였던 교원 및 공무원의 단결권은 또다시 유보되었다.)

3) 인권침해의 대표주자 '국가보안법'

96년 5월 7일 이수성 국무총리의 좌경척결 발언이후 시국사건 구속자는 급증했는데 민가협 발표에 따르면 4월 11일 총선 직후부터 7월 11일까지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이들은 246명에 이른다. (김영삼정권 출범 93년부터 96년까지 4년동안 구속된 양심수는 2,856명이며, 96년 한해동안 구속된 양심수는 1,263명에 이르러, 하루평균 3.45명꼴로 구속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올해초부터 총선 전까지 구속자 118명보다 무려 2.3배 증가한 수치이다. 북한 잠수함사건이후 국보법의 적용은 더욱 횡포를 누렸다. 동국대 신문사 기자가 학보 고정란인 '낙서란'에 무장간첩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실었다는 이유로 국보법상 찬양·고무혐의로 구속되었는가 하면, 컴퓨터통신에 무장공비와 관련된 글을 띄웠다는 이유로 윤석진 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여전히 국보법 7조에 대한 위헌성 논란은 계속되었다. 96년 10월 4일 헌법재판소는 95년 1월 부산지법 제3형사부 박태범 부장판사가 국보법 7조 1항(반국가단체 찬양·고무) 3항(이적단체 가입죄) 5항(이적표현물 제작·배포)에 대한 위헌제청 판결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을 제한해석한다면 위의 법 조항은 개념의 다의성과 적용범위의 광범성에 따른 위헌성은 제거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판결의 파급효과를 보여주듯이, 12월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국보법

김영삼정권 출범 이후 구속된 양심수 현황

	93년	94년	95년	96년	총계
총구속자	195	775	623	1263	2,856
국보법	105	389	285	491	1,270

자료: 민가협 제공(97. 3.7 발표)

위반혐의로 구속돼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사건에 대해 원심을 파기, 서울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이는 "국보법 제7

조 5항의 목적은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족한 것"이라며, 국보법 적용범위를 엄격화하고자 했던 서울지법 재판부의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① 국가보안법에 의한 기본권 제한

96년 5월이후 급증한 국보법 구속자들은 대부분 진보적 단체의 회원들이거나 과거 조직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던 것만으로 안기부의 '건수올리기'에 비판이 가해졌었다. 또 과거 국보법으로 구속된 전력을 가졌거나 가족 중 국보법 관련자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자격을 박탈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9월 부산예술전문대학 만화예술과 전임교수로 임용됐던 전승일 씨(32)는 교수직을 맡은지 불과 2주만에 해직되었다. 전씨의 신원조회 결과 89년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는 것이 사유였다. 이미 전씨는 93년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차정원 씨(33)는 초등학교 신규교사 임용순위에 들었으나 신원조회 결과 남편이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으로 구속돼 복역중이라는 이유로 임용에서 제외당했다. 이는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차 씨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② 박충렬·허인회 씨 무죄판결

국보법 7조 5항 위반혐의로 구속돼 최고형인 10년 구형을 받았던 박충렬 씨(전 전국연합 사무차장)에 대해 서울지법 형사단독 9부 유원석 판사는 "자유민주체제의 기본질서와 존립을 위협할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적표현물의 내용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95년 11월 부여간첩 김동식 씨를 만나고도 신고하지 않은 '불고지' 혐의로 구속된 허인회 씨(32·전 세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가 사건발생 1년만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역시 박 씨와 같은 재판부는 "김동식의 진술중 여러 부분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신빙성이 없으며, 여러 증언을 통해 허씨의 알리바이가 입증되었다"고 밝혔다. 허 씨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행위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할 작정이다.

③ 창실없는 감옥 '보안관찰법'

89년 7월 국회의원 서경원씨 방북사건으로 구속되어 7년간 복역뒤 7월 9일 출소한 방양균 씨는 보안관찰법으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 국보법으로 구속돼 3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보안관찰법에 의해 자동적으로 보안관찰 대상자가 되며, 형기를 다 살고도 자신의 신변·활동에 대해 관할경찰서에 보고할 의무를 지닌다. 이러한 보안관찰법은 또하나의 통제장치를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보안관찰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해당자들의 발목잡기 역할을 하고 있다. 96년 12월 말 보안관찰대상자 서준식 씨(인권운동사랑방 대표)는 돌연 보안관찰처분 위반 수사를 이유로 돌연 출국금지를 받게되었다. 이는 사전심의 거부한 채 제1회 인권영화제에 관여했다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짐작되었다.

장기수들의 억울함은 보안관찰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보안관찰법의 모태가 되는 사회안전법으로 인한 피해를 들 수 있다. 서울고법 제9민사부(재판장 김재진 판사)는 96년 11월 12일 출소장기수 18명이 구 사회안전법에 의해 억울한 보안감호처분을 받았으며 국가를 상대로 낸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장기수들은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75년 제정된 사

회안전법에 의해 형기를 마치고도 보안감호처분 받아 89년 폐기될 때까지 10-16년간 옥살이를 했다는 것이다. 이들 18명뿐 아니라 무려 150여명의 장기수들이 사회안전법에 의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④ 화가 홍성담 씨 출국의 자유에 관한 첫 소송제기

홍성담 씨(41)는 지난 89년 평양축전에 민족해방사 슬라이드 필름을 북한에 보냈다는 이유로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된 적이 있다. 이미 형기를 마치고 92년 석방된 뒤 사면복권까지 받았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작년 영국에서 열리는 고문반대 국제예술제에 참가하기 위해 여권을 신청했으나, 정부는 '신원특이자'라며 신원조치를 이유로 무려 한달 이상이나 여권을 발급하지 않았다. 결국 출국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홍 씨는 국보법으로 구속된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권발급을 지연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출국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며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안기부법(제3조 1항 5호)에 의한 '안기부의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이라는 직무가 과연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여행의 자유를 침해해도 좋은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처음으로 한 것이다.

4)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상·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정보의 자유

① 서적 판금조치

민주사회에서 국보법의 존폐문제가 주요하게 거론되는 가장 큰 이유중 하나는 국민의 기본권이 감시와 처벌의 칼바람 속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난 가을 전국서점에서 벌어진 <내일신문> <말>지등 진보성향의 서적에 대한 회수 및 판금조치는 민주주의의 과거로의 복귀였다. 96년 11월초 광주와 울산등지에서는 경찰이 '좌익출판물 유통실태 점검'이라는 검찰공문을 들고 다니며 이들 간행물의 판매동향을 체크하거나 판매금지 및 반품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검찰공문에는 합법출판물 42종 목록을 비롯해 좌경이념도서 또는 북한원전을 출판한 65개 출판사 명단 및 출판사 사장의 국가보안법 전력까지 표시되어 있었다.

② 영화법 검열폐지 및 남은 과제

96년 6월 음반에 대한 사전심의제도가 폐지된 데 이어 10월 4일 헌법재판소는 영화법상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제도가 국가기관에 의한 사전검열행위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21조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조선총독부가 일제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한 문화·사상 통제의 하나로 지정한 '활동사진 취체규칙'(1916) '활동사진필름 검열규칙'(1924)에 뿌리를 둔 영화사전심의제도가 70여년만에 폐지된 것이다.

그러나 완전히 사전심의 문제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영화의 완전등급제 실시와 실정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영화들의 상영을 위해 등급외영화 전용상영관 설치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이밖에도 다른 부문에서 사전심의문제는 넘어야 할 산이다.

우선 '공연법'과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이다. 공연법은 영화를 포함한 공연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사전심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음비법 중 음반사전심의 문제는 가수 정태춘씨

의 소송과 투쟁으로 사전심의가 철폐되었으나 비디오에 관한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가을 정기국회에서 문체부가 통과시키려고 했던 (가칭)청소년보호법은 사전심의 폐지등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철저히 거스르고 있다. 문체부는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신설, 청소년에 유해한 매체들을 심의하고 이들에 대한 판매금지, 구분격리, 방송시간 제한 등 실질적인 규제를 행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고자 했다. 다행일까 이 법 또한 가정폭력방지법과 마찬가지로 노동법 등에 밀려 처리되지 못했다(이 법은 97년 2월18일 국회통과되었다).

이밖에도 PC통신과 인터넷에 대한 심의가 사실상의 사전검열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침해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영화법 사전심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역행하는 흐름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지난 11-12월에 열린 제1회 인권영화제는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관심 속에서 당초 목표인 '인권 속의 영화, 영화 속의 인권'이라는 부제에 맞게 영화를 통한 인권의식을 확장 측면에 기여한 바가 많다. 하지만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음비법과 공연법 위반을 이유로 많은 압력과 방해공작을 받아야만 했다(3월 17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영화진흥법'의 주요 골자는 △사전심의를 등급심으로 바꾸되 등급회 영화전용관 설치 불허 △공연윤리위원회를 없애는 대신 한국공연예술진흥협회(공진협) 신설 △공진협에 등급판정을 6개월간 보류할 권한 부여 △등급심의위원 추천권의 대한민국예술원 회장 귀속 등으로 현재의 영화사전심의 위헌결정 정신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③ 연세대 사태

96년 내무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8월 12일부터 20일까지 연세대 사태로 인해 연행된 숫자는 5,769명이며, 구속 465명, 불구속 3,338명에 이른다.

연세대 사태는 폭행, 성폭언, 성추행, 고문, 허위자백 강요, 언론에 의한 인권침해 등으로 대표되는 인권을 침해한 사건이었다. 통일논의에 대한 정부창구단일화 방안에 대한 의사·표현의 자유제한로 권리를 원천봉쇄한 것에서부터 음식물, 약품 등의 차단 등에 따른 비인도적 조치에 대한 각계의 문제제기는 연세대 사태가 악화될 대로 악화될 시점에서야 나올 수 있었다. 그만큼 정부와 언론의 공세는 맹위를 떨쳤고, 누구도 선뜻 빨갱이로 낙인찍힌 학생운동세력을 변론하고 나설 엄두조차 낼 수 없었다. 연세대 사태를 기화로 진행된 탄압은 연세대 사태가 예견된 일이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한총련 사태 빌미로 집회·시위는 물론 통신공간, 진보적 출판물, 문화행사등 전 영역에 걸쳐 국민의 사상·표현의 자유침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더욱이 정부는 연세대 사태를 빌미로 집시법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에서부터 군사정권 시절의 악령들이 되살아나기까지 했다.

8월 29일 서울지방법원 김영수판사는 '나우누리'의 한총련 전용정보통신망(CUG)을 폐쇄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대한 반발하고 나선 민변은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자유 및 통신비밀보호법을 보호해야 하며,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등 정보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또한 증거물을 수집하는 것이 아닌 일정한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연세대 사태' 참조)

④ 집시법 위반

신고제로 되어있는 집시법은 사실상 허가제인 셈인데, 그 규정마저 경찰측의 자의적 해석이 많아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7월 13일 탑골공원서 열린 '통일인사석방 및 공안탄압 규탄

결의대회'서 경찰측은 참석자들이 김대통령 얼굴의 가면을 들고 나오자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이를 막았다. 7월 14일에는 항의방문을 간 성남연합회원 48명을 집시법 위반으로 전원 처벌했다. 8월 8일 민가협 등 14개 단체 공동주최로 열린 '96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 행사 도중 집회허가에도 불구하고 시위참가자들이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수의(죄수복)를 입고 포승줄로 묶인 상태에서 시위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방해했다. 이에 민변등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집시법 어디에도 착용할 옷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⑤ 정보통신검열철폐시민연대 결성과 '전자주민카드'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근거해 95년 만들어진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심의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지만, 통신상의 내용을 취급거부, 정지, 제한할 수 있어 사실상의 검열기관으로 존재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열 범위도 대화방, 정치적 견해등 무제한으로 계동을 걸 수 있어, 표현의 자유와 정보기본권 보호는 물론 토론문화마저 위태로울 지경이다.

또한 8월 13일 정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률안은 행정정보의 공개대상을 대폭 제한하고, 공개여부를 심판하는 기구인 정보공개위원회 설치안을 삭제한 것으로 정부의 공개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정부의 통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소위 전자주민카드에까지 미치고 있다. 이에 10월 19일 결성된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국민의 사적권리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위」는 "주민등록증, 국민연금증서, 의료보험증, 인감증명서등 7개 분야 41개 정보를 집약 수록할 것이라는 전자주민카드는 정보누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정보독점에 따른 정부통제 강화등이 우려된다"며 전자주민카드 시행계획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결국 내무부는 97년 3월6일 98년 4월 제주도를 시범지역으로, 99년 10월부터 전국적으로 전자주민카드를 발급 시행하는 것을 뼈대로 한 주민등록법 및 인감증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5) 수사기관에 의한 폭력

96년 내무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5년 한해 수사기관을 포함한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사건은 443건으로 최소 하루에 1.2건 이상 발생하였다. 엄정한 법집행은 공염불이 되어버린 상황이지만 이 역시 연세대 사태이후 더욱 기승을 부린다.

9월 17일 최창희 씨(28·광주시 북구)등 6명은 광주 북부경찰서장 등 20여명 경찰관을 불법체포 및 감금 등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소했다. 이들 경찰관은 9월 9일 밤 한총련 수배자가 있다는 제보를 접하고 쇠파이프와 곤봉, 총으로 무장하고 신분도 밝히지 않은 채 최 씨의 집에 무단침입한 뒤 집단폭행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8월 22일 한총련에 대한 탄압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하던 성남 시민이 성남경찰서 경찰관 2명에게 권총으로 위협당하며 연행된 사건이 발생했다.

96년 9월 5일 낮 12시 45분경 수원 남부경찰서 고등파출소 이성남(29) 경장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1가 경기서적 앞길에서 행인을 치고 도망가는 범인을 쫓던 중 신부호 씨(42·수원시 권선구 금곡동)와 행인 최정연 씨(21·여, 협성대 2) 등 2명을 범인으로 오인하고 실탄을 발사해 각각 전치 4주와 6주의 중상을 입혔다. 이 경장은 당시 정지명령을 한 후 공포탄을 쏜 뒤 실탄을 사용해야 하는 '경찰 총기사용지침'을 무시한 채 곧바로 신 씨등을 향해

실탄을 발사한 것이다.

또 11월 12일 새벽 4시 전경 4백여 명이 고려대 침탈해, 동아리방등에서 잠자고 있던 고려대생 38명을 불법연행하는 사건 등등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는 극에 달한다.

10월 2일 전남 화순 노병우(39)씨 연행과정에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폭행당했던 방치돼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6) 노동

① 풀고가아할 숙제 해고자

96년 하반기에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해고노동자들의 현장복직 투쟁이 전개되었다. 대우정밀 해고노동자 17명은 대우그룹측에 복직합의서 이행을 촉구하며 지속적인 투쟁을 벌였다. 대우그룹측은 89, 91년 해고되었던 38명의 노동자에 대해 96년 5월까지 전원복직시킬 것을 94, 96년 합의했지만 이행하지 않은은 물론 이들을 업무방해죄로 고소조치를 취했다.

LG그룹의 경우 해고자 복직에 있어 어느 사업장 보다는도 악랄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89년

93-96 상반기 해고복직자 실태와 복직 추이

구분	해고업체수	해고자수	복직자수	미복직자수	복직율
93	129	237	191	46	80.1%
94	186	353	270	83	76.5%
95	176	336	263	73	78.3%
96.상반기	56	99	71	28	71.7%

67명이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뒤 이제껏 단 한 명도 복직이 되지 않았다. 95, 96년 거듭 국감 질의대상에 올라 노동부장관이 직접 "LG측에 해고자 복직을 지시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전혀 진척이 없었으며, 96년 가을 해고노동자 성한기 씨와 이동렬 씨의 목숨을 건 41일간의 단식투쟁이 벌어졌다.

② 외국인노동자보호법안 제정 청원과 김해성 목사 구속 사건

96년 8월31일 현재 불법체류자는 11만7백51명이며, 산업연수생은 5만1천4백43명이다.

올해 외국인노동자들은 또다시 한차례 명동성당 농성을 벌였다.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 소장인 김해성 목사가 6월 3일 상담소를 찾아온 불법 외국인노동자를 출입국관리소측이 연행하려하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업무방해등의 혐의로 구속된 것이 발단이 되었다.

외국인노동자 10여명은 6월 10일부터 명동성당에서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상당지원 활동 탄압중단 △김해성 목사외 양혜우 사무국장 석방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사면 등 요구하며 한달 이상 농성을 벌였다. 이들 농성은 7월 16일 김해성 목사가 징역 8월에 집유 1년을 선고받은 뒤 병보석으로 출감하는 것과 동시에 마무리되는데 그 뒤 정기국회에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청원으로 이어졌다(97년 3월4일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국내체류 외국인노동자수는 20만 명을 넘어섰고, 60%가 넘는 12만9천 명이 불법체류자였다).

7) 여성

① 가정폭력방지법

4월 자신과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딸의 동거남을 살해, 구속된 이상희(72)할머니는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유 4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은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이른다.

8월 22일 「가정폭력방지법제정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집행위원장 신혜수)가 발족되고, 국회청원을 거쳐 법제정을 눈 앞에 보게 된다. 가정폭력방지법 주요 내용으로는 △경찰관의 신속한 조치의무화 △국가차원에서 가정폭력피해자와 아동등에 대한 보호 △가해자 처벌등의 조치 마련등이다. 그러나 가정폭력방지법은 노동법·안기부법등에 밀려 다른 법안과 마찬가지로 제정되지 못했다.

② 일본군 위안부 문제- 시민연대 결성

유엔 인권위원회를 비롯해 국제사회는 이미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비인도적인 전쟁범죄며, 국제법을 위반한 범죄로 규정하였다. 또 유엔 「현대형노예문제실무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일본의 '국민기금'에 대한 지지철회 의사를 밝혔다.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가차원의 사과나 법적책임 및 배상은 하지 않고 있으며, 대신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측의 민간위로금인 '국민기금' 지급만을 운운했다. 이 국민기금에 대한 철회와 법적책임 및 배상을 요구하는 국제여련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여전히 과거사죄나 법적 배상은 눈감고 있다.

하지만 일본 내 양심있는 민간단체들은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이행을 촉구하는 활동을 계속 벌이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10월 18일 「강제연행당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연대」가 조직되었다. 시민연대는 서명운동과 모금운동을 시작으로 이후 전후배상법 제정을 위한 운동등을 벌일 계획이다.

또하나의 획기적인 일은 미국 법무부가 12월 3일 일본 전범 16명에 대해 입국을 금지한다는 조치를 발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연대와 정대협은 "유립연합을 포함한 전세계 국가에서 이러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해 주었다"고 평가하며 국제연대 운동을 벌여나갈 것임을 밝혔다.

③ 성폭력 및 성희롱

성폭력은 인간존재의 핵심을 파괴하는 것으로 피해여성은 그 삶이 뿌리부터 무너져 가정이 파괴되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이다. 정부는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94년 4월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지만 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은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성폭력의 가해자 중 친족이 15.4%나 차지하는 점을 감안할 때 친족의 범위를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 또는 친족'보다 제한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성폭력상당소에 따르면 1년에 평균 2천 건의 성폭력 상담을 받았다고 한다. 성폭력 피해 신고율이 실제 건수의 2%에 그치고 있다고 본다면 일년에 25만건 정도의 성범죄가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96년 하반기는 신양중학교장 성추행사건등 여러 건의 성폭력사건이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성폭력 문제의 해결책에는 무엇보다 국가차원의 책임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성폭력의 개념에 대한 사회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성폭력이 정조에 관한 범죄라는 잘못된 인식과 태도가 남아있어 피해자들이 사건노출이나 신분노출을 꺼리게 되고 고소가 어려워지는 것이 성폭력의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8) 사회복지

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OECD 국가중 우리나라는 95년 경제성장률이 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의료·노동시간등 측면에서는 하위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제조업 주당 근로시간 해마다 감소추세이지만 OECD 국가들 대부분 40시간인데 반해 우리나라 94년 48.7시간으로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인구 1천명당 병상수도 증가했지만 94년 4.1인데 반해 일본 15.6(93년), 프랑스 9(94년), 스위스 20.8(91년)이었다. 또 우리나라는 인구 1천명당 의사수 1.2명(94년)으로 일본 1.8명, 프랑스 2.9명, 스웨덴 3명과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교사1인당 고등학생수 역시 32명(96)으로, 일본 16명(91년) 오스트리아 9(93년) 영국 17명(92년) 미국 17(93년)에 비해 하위로 나타났다. 반면 교통사고 사망률은 35.9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복지정책의 현주소의 하나가 장애인 부분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5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 실태조사결과 95년 전국장애인은 1,053,468명(시설: 24,631명 재가:1,028,837명)으로 조사되었다. 실제 장애인관련 단체들은 실태조사부분에서 마저 신뢰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실태조사마저 불확실한 상황이고 보니 장애인정책이란 것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의문이다. 그러한 속에 9월 김영삼 대통령 '루즈벨트 국제장애인상' 수상에 대한 장애인계의 반발은 당연한 것이다. 이는 92년 전체 33조의 국가예산중 40억 차지했던 장애인복지예산이 3년이 지난 95년 50조의 국가예산중 0.013%인 64억에 불과해 4년째 답보상태에 머문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사회약자층인 장애인 뿐 아니라 노인 역시 살아가기는 고달프다. 이기남 씨(68)가 제기한 '노령수당지급제외처분취소청구소송'이 승소판결을 받아 10월말부터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가 노령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실현과는 거리가 멀다.

또 농민들은 9월 10일 의료보험통합실시와 식용쌀 수입반대를 위한 전국농민대회를 열어 살농정책에 비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이수금 의장은 11월 28일부터 정부여당의 살농정책 항의하며 거리단식을 통해 추곡수매가 3% 인상안 철회와 12.3% 인상, 통합의료보험제 실시를 요구했으나 여전히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9) 미완의 '불처벌'- 전노재판

잘알다시피 5·18특별법 제정으로 시작된 전노재판은 초기에 이미 한계를 드러냈듯이 더 이상 과거청산의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다.

5·18특별법 제정과 더불어 전·노 전직대통령등 16명 구속되어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이 재판은 김영삼정부의 과거청산 작업의 허실을 그대로 드러내 준다. 국민의 재판이라기

보다는 법정재판에 머문 2심 재판에서 전두환씨에게는 무기, 노태우씨에게는 17년이 선고되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역사적 평가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다고 느끼면서도 무관심하다. 우선 국민들은 재판이 요식행위가 아닐까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법원의 선고형량 그대로 집행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다. 다음으로 역사를 바로세우겠다는 검찰의 태도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가 없으며, 구조적 불의의 문제를 단순히 전·노 두사람의 개인차원의 문제로 국한시켜 버렸으며, 법적 처벌의 진상조사가 병행이 되지 못한 것 때문이다. 광주학살 이후 16년만에 심판대에 오른 이번 재판은 진상규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몇 명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진정한 과거청산의 시작은 불법으로 제정된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노동약법, 국가보안법 등의 청산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과거청산은 말 잔치에 불과하다. 과거청산과 관련해 96년 하나의 성과는 「5·18 완전해결과 정의실현, 희망을 위한 과거청산 국민위원회」의 발족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교협·인권운동사랑방·전국연합·한국교회 인권센터 등 1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국민위원회는 올바른 역사바로세우기 작업으로 장기적인 전망 속에 행보를 내딛는다. 그 주요사업으로는 △인권침해 진상규명 △인권침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상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요구운동 △과거 부정적인 제도와 법령에 대한 개폐운동등이다.

10) 주한미군 문제- 제2의 윤금이 이기순씨 사건 및 미군기지 환경오염 실태 조사

96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5년 한해 발생한 미군범죄사건은 241건(304명)으로 1명이 구속, 293명이 불구속처리되었다. 96년 8월 말 현재 80건(102명)의 미군범죄사건이 발생했고, 구속 1명, 불구속 98명을 기록했다. 9월 발생한 이기순(44) 씨 살인사건은 제2의 윤금이사건으로, 범인은 한국 근무 3주째인 미국 사병 무니치 에릭 스티븐(22) 이병이었다. 이 사건은 범인의 구속수사권을 한국측이 갖지 못한 문제점을 다시 한번 드러냈으며, 한미행정협정의 완전 개정을 요구하게 된다. 이와 때를 같이해 9월 초순부터 한미주둔둔지위협정(SOFA) 제7차 개정협상이 진행되었으나 진전없이 호지부지 되었다.

96년 12월초 국내에서는 최초로 녹색연합과 우리땅미군기지퇴거전국공동대책위원회(준) 등에 의한 전국 미군기지 환경조사 결과 1차 보고가 있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는 총7천3백60만평에 96개의 미군관련 기지와 시설이 있는데 환경오염 실태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군기지 내 조사는 불가능했고 주변시설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소음·수질·토양오염등이 무척 심각했다. 특히 레이더에 의한 생태계 파괴, 전 국토에 깔려있는 송유관으로 인한 토양오염, 폭격장 문제, 기지주변의 귀화식물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미국측에 미군주둔지역에 대한 오염조사권과 오염지역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화를 요구할 것과 한미행정협정 개정 등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3. 글을 마치며

6·10항쟁 10주년을 맞는 97년은 15대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이기도 하다. 김영삼 정권은

재집권을 위해 야권공조의 파괴와 민족민주운동에 대한 공안탄압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의도는 재벌주의 경제정책과 남북 대결기조 유지, '경제+안보' 정치를 대선을 앞둔 올해 주된 정국운영책으로 삼겠다는 연두기자회견에서 읽을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대로 김영삼 정권은 96년 한총련을 탄압하고 이 사건을 대대적인 이념공세의 계기로 활용하고 그 토대를 마련했다. 그리고 구체적 사업으로 안기부법·노동법 개악을 현실화 시켰다. 97년 한해는 권력교체기를 앞두고 과거와 마찬가지로 공안정국 조성기도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미 황장엽 망명을 통해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고정간첩 5만명' 설등이 유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올 한해 인권상황은 암울하기 짝이 없다. 정권은 민민운동세력의 방심한 틈을 비집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박탈하려고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움직임은 여전히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청소년보호법의 제정이나 전자주민카드의 입법예고등은 방심한 틈을 비집고 들어선 정부의 횡포를 느끼게 한다.

또한편으로 정권교체기는 민족민주진영의 총단결을 통한 민주주의적 지형과 토대를 강화시킬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밖에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B규약) 2차 정부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인데, 민간단체들의 반박보고서 활동을 통해 문민정부의 인권실정이 국제무대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인권의 지평을 넓힌다는 것, 권리를 획득한다는 것은 한순간의 노력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님을 누구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의 인권상황이 어느 때보다도 '암울'할 지라도 희망은 여전히 우리곁에 살아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향배는 결정될 것이다.

머리글	96년 하반기 인권현황 개황·인권운동사랑방	/37
연세대 사태	(연세대 사태)	/47
부 록		/325

인권하루소식

합본 VII

(675- 796호)

제675호(96.7.2, 화)		/51
------------------	--	-----

- 1면 · "동티모르 독립과 연대에 관하여" 인권운동가 인권협 초청으로 발간
· 전해부, 반쪽되는 LG레고자 연행·석방에 항의하며 노동부 방문
· 전학원 사건 공개재판에 정화대 무한응
- 2면 · "아태지역의 국제지원 촉구", 호주 시드니에서 동티모르 국제회의 열려

제676호(96.7.3, 수)		/53
------------------	--	-----

- 1면 ·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치우 보장", 국민회의 외국인노동자특별법 제정 추진
· UN 현대형 노역문제 실무위원회, 일본정부의 위안부 위한 기금 지급 철회
· 노건주 피원 불명 인정
- 2면 · <자료> AI 보고서 96 남한련① - 국보법 개정과 표현·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조약 준수 요구
· AI 인권 보장 28일까지 신청

제677호(96.7.4, 목)		/55
------------------	--	-----

- 1면 · 민주노총, 10명중 3명만 산재 처리-산재를 정부발표보다 35% 줄여
· 연변, 위대투쟁 구인 문제서라도 진실 밝힐 것 촉구
· 민주노총, 성리해고자를 장형서 송파업 봉사 권명
· <인더뷰> 동티모르 독립운동가 선포스 씨 "동티모르연립" 기증
- 2면 · 세계의 인권① - 고문, 가혹 처우 금지 조약에 대한 100여국 발의

1997. 3.

제678호(96.7.5, 금)		/57
------------------	--	-----

- 1면 · 고문부유증 납고
· 남북합의 이행속도
· 장대우연구소, 지적재산권 1년 행사

인권운동사랑방